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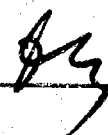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358

시행일자 1996. 2. 2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훈령제 827 호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27 호 2부. 끝.

원안은내무국시민과
에 보관함.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감사담당관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2. 29.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27 호 (생략). 끝.

검열
1996. 2. 28
통제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안

1. 개정이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 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93. 8.20 부터 관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관용심사위원회는 시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용 대상자의 처분 양정을 심사토록 기능을 명확히 함 (원 제2조).
- 나.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이 하향조정(2~3급) 됨에 따라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으로 함 (원 제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감사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안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자체 감사 및 조사결과와 감사원 등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중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를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u></p> <p>①삭제('95.5.15)</p> <p>②<u>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와 감사원등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용 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한다.</u></p> <p><u>제3조(위원회의 구성)</u>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시본청 국·과장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총괄계장을 간사로 한다.</p> <p>②생략</p>	<p><u>제2조(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u>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와 감사원등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중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용 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한다.</p> <p><u>제3조(위원회의 구성)</u> ①..... <u>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1급공무원으로,</u></p> <p>②현행과 같음</p>